|  |  |  |
| --- | --- | --- |
| **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 제도 실시와 관련한**  **상무부의 임시규정**  상무부 공고 2011년 제8호  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안전심사 신고 업무를 잘 하기 위하여, 《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 제도 구축에 대한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國辦發 [2011] 6호)와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 제도 실시와 관련한 상무부의 임시규정》을 아래와 같이 공표한다.  이 규정을 실시하는 기간에 공중은 2011년 3월 5일부터 4월 10일까지 상무부에 의견과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상무부는 이 규정 실시상황에 대한 추적 평가를 실시하여 공중의 의견과 건의에 결부시켜 규정을 완벽히 할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2011년 3월 4일  1. 외국투자자가 《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 제도 구축에 대한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에서 규정한 안전심사 범위에 속하는 경내기업을 인수 합병하는 경우에는 상무부에 인수합병 안전심사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2개 또는 그 이상의 외국투자자가 공동으로 인수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또는 그중의 1개 외국투자자가 상무부에 인수합병 안전심사를 신청(이하 신청인이라 함)할 수 있다.  2. 지방 상무주무부서에서 《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인수합병 규정》, 《외국인투자기업 투자자 지분변경 몇 가지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인수합병 거래 신청을 수리할 때 인수합병 안전심사 범위에 속하나 신청인이 상무부에 인수합병 안전심사를 신청하지 아니한 상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잠시 인수합병 거래신청을 수리하지 않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상무부에 인수합병 안전심사를 신청하도록 요구하고 아울러 관련 상황을 상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3. 신청인은 상무부에 인수합병 안전심사를 정식 신청하기 전에 그의 경내기업 인수합병 절차성 문제와 관련하여 상무부에 상담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4. 상무부에 인수합병 안전심사를 정식 신청할 때 신청인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법정대표자 또는 그 수임대표가 서명한 인수합병 안전심사 신청서와 거래상황 설명서  (2) 공증 및 법적 인증을 거친 외국투자자 신분증명서 또는 등록등기증명, 자금신용증명서류, 법정대표자 신분증명 또는 외국투자자의 위임장, 수임대표 신분증명  (3) 외국투자자 및 관련기업(그 실제 지배인, 일치 행동인 포함) 상황설명, 유관 국가정부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  (4) 인수합병대상 경내기업의 상황설명, 정관, 영업집조(사본), 회계감사를 거친 직전연도의 재무제표, 인수합병 전후의 조직기구, 투자대상기업의 상황설명 및 영업집조(사본)  (5) 인수합병을 통해 설립하는 외국인투자기업 계약, 정관 또는 합명합의서, 그리고 주주 각방이 임명한 이사회 구성원, 초빙한 총경리 또는 합명인 등 고위관리인원 명단  (6) 지분 인수합병 거래는 지분양도합의서 또는 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증자분 인수합의서, 인수합병대상 경내기업의 주주결의서, 주주총회 결의서 및 상응하는 자산평가보고서를 제출  (7) 자산 인수합병 거래는 경내기업의 권력기구 또는 재산권 소지인의 자산매각 결의서, 자산구매합의서(구매자산 리스트, 상태 포함), 합의 각방의 상황, 그리고 상응하는 자산평가보고서를 제출  (8) 외국투자자가 인수합병 후에 향유하는 의결권이 주주회의나 주주총회, 이사회결의 또는 합명사무 집행에 주는 영향에 대한 설명, 기타 경내기업의 경영정책, 재무, 인사, 기술 등 실제 지배권이 외국투자자 또는 그 경내 관련기업에 이전될 수 있는 상황설명, 그리고 상술한 상황과 관련되는 합의서 또는 문건  (9) 상무부에서 요구하는 기타 문건.  5. 신청인이 제출한 인수합병 안전심사 신청문건이 완비하고 법정요구에 부합되는 경우 상무부는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그 신청을 수리함을 통지해야 한다.  인수합병 안전심사 범위에 속하는 경우 상무부는 15일 근무일 내에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고지하고 그 후 5일 근무일 내에 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 부(部)간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라 함)에 심사를 회부해야 한다.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신청 수리통지를 한 날로부터 15일 근무일 내에 신청인은 인수합병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지방 상무주무부서는 인수합병 심사를 할 수 없다. 15일 근무일 후 상무부에서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은 국가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상응하는 수속을 할 수 있다.  6. 상무부는 연석회의의 서면 심사의견을 받은 후 5일 근무일 내에 심사의견서를 서면으로 신청인(또는 당사자), 그리고 인수합병 거래를 관리하는 지방 상무주무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1) 국가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외국투자자 경내기업 인수합병 규정》, 《외국인투자기업 투자자 지분변경 몇 가지 규정》, 《외국인투자기업 경내투자 관련 임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관리권한을 가진 주무부서에서 인수합병 거래 수속을 할 수 있다.  (2) 국가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신청인이 인수합병 거래를 조정하지 않거나 또는 신청서류를 수정하여 재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수합병 거래를 신청할 수 없다.  (3) 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인수합병 행위가 이미 국가안전에 영향을 미쳤거나 또는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상무부는 연석회의 심사의견에 근거하여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당사자의 거래를 중지시키거나 관련 지분, 자산을 양도하도록 하거나 또는 기타 유효한 조치를 취하여 당해 인수합병 행위가 국가안전에 주는 영향을 제거해야 한다.  7. 상무부가 연석회의에 심사를 회부한 후 신청인이 신청 서류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인수합병 거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상무부에 거래 수정 방안이나 인수합병 거래 취소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상무부는 신청보고와 관련 문건을 받은 후 5일 근무일 내에 연석회의에 회부해야 한다.  8. 국무원 유관부서, 전국적 업계협회, 동업기업 및 상, 하류 기업이 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인수합병에 대해 안전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무부에 인수합병 안전심사 건의를 제기하고 관련 상황을 설명(인수합병 거래의 기본상황, 국가안전에 주는 구체적 영향 등 포함)해야 한다. 인수합병 안전심사 범위에 속하는 경우 상무부는 5일 근무일 내에 동 건의를 연석회의에 회부해야 한다. 연석회의에서 인수합병 안전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무부는 연석회의 결정에 따라 외국투자자에게 이 규정에 따라 인수합병 안전심사를 신청하도록 요구한다.  9. 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인수합병 신청을 연석회의 심사에 회부하지 않았거나 또는 연석회의에서 심사를 한 후 국가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다고 인정한 후 인수합병 거래 조정이나 관련 합의서 또는 문건 등의 수정으로 인해 당해 인수합병 거래가 《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 제도 구축에 대한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에서 규정한 인수합병 안전심사 범위에 속하는 경우 당사자는 거래를 중지해야 하며, 외국투자자는 이 규정에 따라 상무부에 인수합병 안전심사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10. 이 규정에서의 미진사항은 《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 제도 구축에 대한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에 따라 집행한다.  11. 이 규정은 2011년 3월 5일부터 시행하며 2011년 8월 31일까지 유효하다. |  | **商务部实施外国投资者并购**  **境内企业安全审查制度**  **有关事项的暂行规定**  商务部公告2011年第8号  　　为做好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安全审查申报工作，根据《国务院办公厅关于建立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安全审查制度的通知》（国办发[2011]6号）以及外商投资相关法律法规，现公布《商务部实施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安全审查制度有关事项的暂行规定》。  　　本规定实施期间，公众可于2011年3月5日至4月10日，向商务部提交意见和建议。商务部将对本规定实施情况进行跟踪、评估，并结合公众意见和建议，对规定进行完善。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二〇一一年三月四日  　　一、外国投资者并购属于《国务院办公厅关于建立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安全审查制度的通知》明确的并购安全审查范围的境内企业，应向商务部提出并购安全审查申请。  　　两个或者两个以上外国投资者共同并购的，可以共同或确定一个外国投资者向商务部提出并购安全审查申请（以下简称申请人）。  　　二、地方商务主管部门在按照《关于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的规定》、《外商投资企业投资者股权变更的若干规定》等有关规定受理并购交易申请时，对于属于并购安全审查范围，但申请人未向商务部提出并购安全审查申请的，应暂不受理并购交易申请，书面要求申请人向商务部提交并购安全审查申请，并将有关情况上报商务部。  　　三、在向商务部提出并购安全审查正式申请前，申请人可就其并购境内企业的程序性问题向商务部提出商谈申请。  　　四、在向商务部提出并购安全审查正式申请时，申请人应提交下列文件：  　　（一） 经申请人的法定代表人或其授权代表签署的并购安全审查申请书和交易情况说明；  　　（二）经公证和依法认证的外国投资者身份证明或注册登记证明及资信证明文件；法定代表人身份证明或外国投资者的授权代表委托书、授权代表身份证明；  　　（三）外国投资者及关联企业（包括其实际控制人、一致行动人）的情况说明，与相关国家政府的关系说明；  　　（四）被并购境内企业的情况说明、章程、营业执照（复印件）、上一年度经审计的财务报表、并购前后组织架构图、所投资企业的情况说明和营业执照（复印件）；  　　（五）并购后拟设立的外商投资企业的合同、章程或合伙协议以及拟由股东各方委任的董事会成员、聘用的总经理或合伙人等高级管理人员名单；  　　（六）为股权并购交易的，应提交股权转让协议或者外国投资者认购境内企业增资的协议、被并购境内企业股东决议、股东大会决议，以及相应资产评估报告；  　　（七）为资产并购交易的，应提交境内企业的权力机构或产权持有人同意出售资产的决议、资产购买协议（包括拟购买资产的清单、状况）、协议各方情况，以及相应资产评估报告；  　　（八）关于外国投资者在并购后所享有的表决权对股东会或股东大会、董事会决议、合伙事务执行的影响说明，其他导致境内企业的经营决策、财务、人事、技术等实际控制权转移给外国投资者或其境内外关联企业的情况说明，以及与上述情况相关的协议或文件；  　　（九）商务部要求的其他文件。  　　五、申请人所提交的并购安全审查申请文件完备且符合法定要求的，商务部应书面通知申请人受理申请。  　　属于并购安全审查范围的，商务部在15个工作日内书面告知申请人，并在其后5个工作日内提请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安全审查部际联席会议（以下简称联席会议）进行审查。  　　自书面通知申请人受理申请之日起的15个工作日内，申请人不得实施并购交易，地方商务主管部门不得进行并购审查。15个工作日后，商务部未书面告知申请人的，申请人可按照国家有关法律法规办理相关手续。  　　六、商务部收到联席会议书面审查意见后，在5个工作日内将审查意见书面通知申请人（或当事人），以及负责并购交易管理的地方商务主管部门。  　　（一）对不影响国家安全的，申请人可按照《关于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的规定》、《外商投资企业投资者股权变更的若干规定》、《关于外商投资企业境内投资的暂行规定》等有关规定，到具有相应管理权限的相关主管部门办理并购交易手续。  　　（二）对可能影响国家安全的，申请人未经调整并购交易、修改申请文件并经重新审查，不得申请并实施并购交易。  　　（三）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行为对国家安全已经造成或可能造成重大影响的，根据联席会议审查意见，商务部会同有关部门终止当事人的交易，或采取转让相关股权、资产或其他有效措施，以消除该并购行为对国家安全的影响。  　　七、在商务部向联席会议提交审查后，申请人对申报文件有关内容做出修改或撤销并购交易的，应向商务部提交交易修改方案或撤销并购交易申请。商务部在收到申请报告及有关文件后，于5个工作日内提交联席会议。  　　八、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国务院有关部门、全国性行业协会、同业企业及上下游企业认为需要进行并购安全审查的，可向商务部提出进行并购安全审查的建议，并提交有关情况的说明（包括并购交易基本情况、对国家安全的具体影响等）。属于并购安全审查范围的，商务部应在5个工作日内将建议提交联席会议。联席会议认为确有必要进行并购安全审查的，商务部根据联席会议决定，要求外国投资者按本规定提交并购安全审查申请。  　　九、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申请未被提交联席会议审查，或联席会议审查认为不影响国家安全的，若此后因调整并购交易、修改有关协议或文件等因素，导致该并购交易属于《国务院办公厅关于建立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安全审查制度的通知》明确的并购安全审查范围的，当事人应当停止交易，由外国投资者按照本规定向商务部提交并购安全审查申请。  　　十、本规定未尽事宜，按照《国务院办公厅关于建立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安全审查制度的通知》执行。  　　十一、本规定自2011年3月5日起实施，有效期至2011年8月31日。 |